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10-30

창 원 지 방 법 원

제 1 형 사 부

판 결

사 건	2026노99 저작권법위반
피 고 인	A
항 소 인	검사
검 사	이선균(기소), 이주은(공판)
변 호 인	변호사 홍재욱(국선)
원 심 판 결	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. 1. 7. 선고 2025고정234 판결
판 결 선 고	2026. 10. 20.

주 문

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항소이유의 요지(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)

작품 간의 유사성의 정도, 접근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,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10-30

2.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

가. 원심의 판단

원심은 그 판시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,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저작물 게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.

나. 당심의 판단

1)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,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,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(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).

2)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이 사건 전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도 않았다.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,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10-30

3. 결론

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주연 _____

판사 김나영 _____

판사 어승욱 _____